

멸쟁법과 쟁사 해결 원칙

- 현전비니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

이자랑*

• 목 차 •

I. 서론

II. 4종 쟁사와 칠멸쟁법

III. 현전비니의 성립 요건

IV. 결론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 『大覺思想』 제41집 (2024년 6월), pp.173-204.

한글요약

본 고에서는 칠멸쟁법(七滅諍法) 중 하나인 현전비니(現前毘尼)를 중심으로 승가의 쟁사(諍事) 해결 원칙을 검토하였다. 빨리울 「멸쟁건도」에 의하면, 비구 간에 쟁사가 발생할 경우 칠멸쟁법, 즉 일곱 가지 방법을 통해 소멸시켜야 한다. 칠멸쟁법이란 현전비니, 억념비니, 불치비니, 자연치, 다인어, 떡죄상, 여초부지를 말한다. 이들 멸쟁법은 쟁사의 성격에 따라 각각 선택적으로 적용되는데, 현전비니만은 모든 쟁사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요컨대 현전비니는 기본 멸쟁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전비니는 승가·법·율·사람의 현전, 즉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중 승가현전이란 멸쟁을 시도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결격 사유가 없는 청정 비구로 정족수를 채우고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참석이 어려운 자는 위임을 해야 한다. 셋째, 멸쟁갈마가 실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구가 없어야 한다.

한편, 법현전과 율현전은 기존에는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하여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이해되어 왔지만, 빨리울의 주석 『사만따빠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 의하면, 이미 발생한 사안을 율장에 규정된 갈마의 진행 방식에 근거하여 쟁사를 수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현전은 쟁론 중인 양측 비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멸쟁갈마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멸쟁법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있으나, 본 고에서는 주석서의 설명에 유의하며 현전비니의 각 조건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승가의 멸쟁법은 여법(如法)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화합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주제어

멸쟁법, 칠멸쟁법, 쟁사, 현전비니, 논쟁 쟁사, 비난 쟁사, 범계 쟁사, 행사 쟁사, 「멸쟁건도」, 화합

1. 서론

승가는 화합승(和合僧, samagga-saṃgha)¹⁾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화합을 중시하는 공동체이다. 하지만, 승가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 만큼 구성원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에 부딪는 육화경법(六和敬法) 등을 설하여 평소 서로 배려하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한편, 갈등이 발생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하여 화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멸쟁법(滅諍法)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멸쟁법은 승가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여기서 멸쟁이란 사안, 문제, 다툼, 분쟁, 쟁사(諍事) 등을 의미하는 ‘아디까라나(adhikaraṇa)’와 평온, 고요, 소멸 등을 의미하는 ‘사마타(samatha)’가 합쳐져 만들어진 ‘아디까라나 사마타’라는 복합어에 해당하는 의역이다. 사안을 수습하여 평온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멸쟁법에는 총 7가지가 있으며, ‘칠멸쟁법(satta adhikaraṇasamathā dhammā)’이라 불리는 이들 멸쟁법의 구체적인 명칭은 구족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ātimokkha)²⁾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명칭만 언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빨리울 소품 「멸쟁건도(滅諍健度, samathakkhandhaka)」³⁾에서 설해진다.

1) Vin, vol.3, p.172

『사분율』(大正藏22, 594하)

2) 戒經이라고도 한역한다.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 할 조문을 모아 놓은 조문집을 일컫는다. 보름마다 한번씩 布薩(uposatha)의식에서 암송하며 비구 및 승가의 청정을 확인한다. 『사분율』에 의하면, 비구 바라제목차는 바라이 4조, 승잔 13조, 부정 2조, 사타 30조, 단타 90조, 제사니 4조, 중학 100조, 멸쟁 7조로 구성된다.

3) 빨리울 「Samathakkhandhaka」(Vin, vol.2, pp.73-104)

『사분율』, 「滅諍健度」(大正藏22, 913하-922하)

『오분율』, 「滅諍法」(大正藏22, 153하-156중)

『십승률』 「諍事法」(大正藏23, 251상-256중)

『마하승기율』(大正藏22, 327상 이하).

칠멸쟁법을 구족계에 넣어 둔 이유는 구성원(비구, 비구니) 모두가 승가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일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승가에서 소임을 맡고 있거나 법랍이 높아 다른 비구들을 지도 내지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지만, 다른 비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가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비구(혹은 비구니, 이하 비구만 언급)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갈등을 없애고 화합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갈등을 방치하여 승가에 분열이 발생한다면, 오역죄(五逆罪) 중 하나로 거론될 정도로 중죄인 파승(破僧, samghabheda)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칠멸쟁법에 대한 숙지는 모든 비구의 의무인 것이다. 한국불교의 경우에도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중헌 제9조 ①항에서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 자라야 한다.”⁴⁾라고 하여, 구족계 수지를 조계종 승려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칠멸쟁법의 수지는 조계종 승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조항이다.

멸쟁법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여러 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며,⁵⁾ 이를 통해 멸쟁법의 내용이나 특징도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

4)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검색일: 2024.04.04.

5) 멸쟁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가 있다.

平川 彰, 「原始佛教教團における裁判組織」, 『古代學』 2-1, 古代學協會, 1953, pp.1-19

佐藤密雄, 『原始佛教教團の研究』, 山喜房佛書林, 1972, pp.329-409

平川 彰, 「原始佛教教團における紛争解決について」, 『日本佛敎學會年報』 39, 日本佛敎學會年報, 1974, pp.21-40

Durt, Hubert, “The Counting Stick(Śalākā) and the Majority-Minority Rule in the Buddhist Community”, 『印度學佛敎學研究』 23-1,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74, pp.470(28)-464(34)

森 章司, 『初期佛敎教團の運營理念と實際』, 國書刊行會, 2000.

「サンガにおける紛争の調停と犯罪裁判」, 『中央學術研究所紀要』 モノグラフ篇, No.16, 論文20. (<http://www.sakya-muni.jp>)

이에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려하며 향후 좀 더 정확하게 멸쟁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시각에서 재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⁶⁾ 본 고에서는 먼저 빨리올 소품 「멸쟁건도」와 그 주석 『사만따빠

「紛争解決法としての多教決とその理念」, 『中央學術研究所紀要』モノグラフ篇, No.16, 論文21.(<http://www.sakya-muni.jp>)

É, Nolot. “Studies in Vinaya Technical Terms I-III”,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22, 1996, pp.92-115.

목정배, 「七滅諍法の 現代的意味」, 『明星스님古稀記念佛敎學論文集』, 雲門僧伽大學出版部, 2000, pp.329-343.

이자랑,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단의 쟁사 해결 방법 -빨리올 「멸쟁건도」를 중심으로-」, 불교교단사연구소 편, 『僧伽和合과 韓國佛敎의 未來』, 헤민기획, 2005, pp.31-63.

Masanori Shōno, “On adhikaraṇa”, 『印度學佛敎學研究』 54-3, 日本印度學佛敎學會, 2006, pp.1167(55)-1170(58).

佐々木閑, 「律藏の中のアディカラナ1」, 『佛敎研究』 35, 國際佛敎徒協會, 2007, pp.135-193.

이자랑,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선문화연구』 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2, pp.1-41.

마 성, 「四種諍事와 七滅諍法の 意義 -『빨리올』과 『사분올』의 「멸쟁건도」를 중심으로-」, 불교교단사연구소 편, 『僧伽和合과 曹溪宗의 未來』, 헤민기획, 2014, pp.167-212.

Stuart, Daniel. “Legislating Consent: Dispute, Accord, and the Vote in Early Indian Monasticisms”, Susan Andrews & Jinhua Chen & Culian Liu(Eds.), *Rules of Engagement*, Freiburg: Dunhuang Academy, 2017, pp.225-267.

이자랑, 「단사인(斷事人) 제도과 승가 분쟁 해결의 원칙: 제2결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와 사회』 10-1,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pp.131-160.

한편, 멸쟁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징벌갈마를 연구한 青野道彦, 『パーリ佛敎戒律文獻における懲罰儀禮の研究』, 山喜房佛書林, 2020은 세심하게 주석까지 검토하며 승가의 징벌갈마가 갖는 특징을 밝힌 훌륭한 저작으로 멸쟁법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덕산(원두)가 발표한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그 문제점」, 불교교단사연구소 편, 『僧伽和合과 韓國佛敎의 未來』, 2005, 헤민기획, pp.259-326은 칠멸쟁법을 조계종의 실제 징계 사례와 관련지어 논하며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디까(Samantapāsādikā)⁷⁾』(이하 Sp로 표기)의 해당 부분의 설명을 고려하며 칠멸쟁법 중 ‘현전비니(現前毘尼, sammukhāvinaya)’라 불리는 멸쟁법을 중심으로 승가의 쟁사 해결 원칙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전비니는 쟁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멸쟁법이므로, 현전비니의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승가의 멸쟁법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II. 4종 쟁사와 칠멸쟁법

「멸쟁건도」에 의하면 비구 간에 발생하는 쟁사는 4종이며, 각 쟁사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멸쟁법도 다르다.⁸⁾ 4종 쟁사는 다음과 같다.

비구들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쟁사가 있으니, [즉] 논쟁 쟁사(vivāda-adhikaraṇa), 비난 쟁사(anuvāda-adhikaraṇa), 범계 쟁사(āpatti-adhikaraṇa), 의식 쟁사(kicca-adhikaraṇa)이다.⁹⁾

6)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4종 쟁사와 칠멸쟁법의 내용 및 관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거나, 칠멸쟁법 중에서도 ‘斷事人 제도’라 불리는 일종의 위원회 결정 제도와 ‘多人語’라 불리는 다수결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멸쟁법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Sp, vol.6, pp.1191-1199.

8) 4종 쟁사와 칠멸쟁법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재검토한다.

9) “cattarīmāni bhikkhave adhikaraṇāni vivādādhikaraṇaṃ anuvādādhikaraṇaṃ āpattādhikaraṇaṃ kiccādhikaraṇaṃ.”(Vin, vol.2, p.88) 『사분율』에서도 “네 가지 종류의 쟁사가 있으니, 言諍·覓諍·犯諍·事諍이다(有四種諍 言諍 覓諍 犯諍 事諍).”라고 하여 총 4종을 든다. (大正藏22, 916상)

1. 논쟁 쟁사

첫째, 논쟁 쟁사(vivāda-adhikaraṇa, 言諍)이다. ‘논쟁’이나 ‘의견 차이로 인한 말다툼’ 등을 의미하는 ‘비바다(vivāda)’와 ‘쟁사, 문제, 사안, 분쟁’ 등을 의미하는 ‘아디까라나(adhikaraṇa)’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vivāda-adhikaraṇa¹⁰⁾로, 논쟁에 의해 발생한 쟁사를 말한다. 「멸쟁건도」에 의하면, 아디까라나라는 용어 없이 비바다 라고만 할 경우에는 부모 자식, 형제 혹은 친구 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말다툼을 의미한다고 한다.¹¹⁾ 아디까라나 라는 말이 붙어야 승가에서 비구들 간에 발생하는 쟁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디까라나’라는 용어는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워 선행연구에서도 논의가 많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율장 연구자인 사사키 시즈카(佐々木閑)는 총 9편의 논문을 통해 경과 율에 나타나는 아디까라나의 용례를 검토하며 그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¹²⁾ 그는 바라제목차와 경분별·건도부에서 사용되는 아디까라나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며, 전자에서 문제나 논점 등을 의미하던 것이 후자에 이르러 다툼, 쟁사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최근에 징벌갈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아오노 미치히코(青野道彦)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법적] 사안(事案)’이라 번역한다.¹³⁾ 빨리울에서 아디까라나를 논점이나 문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아디까라나를 ‘다

10) 『사분율』(大正藏22, 916상)과 『오분율』(大正藏22, 154상)에서는 ‘言諍’이라고 하며, 『십송률』(大正藏23, 251중, 411중)에서는 ‘鬪諍事’ 혹은 ‘相言諍’, 『마하승기율』(大正藏22, 327중)에서는 ‘相言諍’이라고 한다.

11) Vin, vol.2, p.92.

12) 佐々木閑, 「律藏の中のアディカラナ1」, 『佛敎研究』 35, 國際佛敎徒協會, 2007, pp.135-193을 비롯하여 동일한 주제의 총 9편의 일련의 논문이 있다.

13) 青野道彦, 앞의 책, 2020, pp.465-467. adhikaraṇa에 관한 선행연구 내지 그 분석은 이 부분을 참고 바람.

툼’(즉, 쟁사)이라는 의미로 단정해 버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쟁사’와 ‘문제’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되는 번역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빨리올의 용례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4종 쟁사의 경우에도 논쟁 쟁사와 비난 쟁사는 쟁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범계 쟁사와 행사 쟁사는 쟁사로 발전하지 않은, 말하자면 범계 확정 절차와 같마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번역어가 적당할지 향후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문제이므로, 본 고에서는 일단 한역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쟁사(諍事)’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쟁이란 무엇에 관한 논쟁인가? 빨리올 「멸쟁건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구들아! 여기에서 비구들이 ‘법(法)이다·법이 아니다·율(律)이다·율이 아니다·여래(如來)가 설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것이다·여래가 설하지 않은 것이며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여래가 행한 것이다·여래가 행하지 않은 것이다·여래가 제정한 것이다·여래가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죄이다·무죄이다·가벼운 죄이다·무거운 죄이다·유여죄(有餘罪)이다·무여죄(無餘罪)이다·추죄(麤罪)이다·비추죄(非麤罪)이다.’¹⁴⁾라고 논쟁한다. 이에 대한 다툼, 싸움, 쟁론, 논쟁, 다양한 설, 다른 설, 화를 돋우는 언설, 투쟁, 이것이 언쟁이다.¹⁵⁾

14) 유여죄란 참회하거나 일정한 복죄 기간을 거쳐 출죄하면 청정해질 수 있는 승잔 이하의 죄, 무여죄는 복권의 가능성이 없는 바라이를 일컫는다. 한편, 추죄와 비추죄는 각각 중죄와 경죄의 내용과 동일하다. 즉 추죄는 바라이와 승잔, 비추죄는 그 외의 죄를 말한다.

15) “idha bhikkhave bhikkhū vivadanti dhammo ’ti vā adhammo ’ti vā vinayo ’ti vā avinayo ’ti vā bhāsitaṃ lapitaṃ tathāgatenā ’ti vā abhā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ā ’ti vā āciṇṇaṃ tathāgatenā ’ti vā anāciṇṇaṃ tathāgatenā ’ti vā paññattaṃ tathāgatenā ’ti vā apaññattaṃ tathāgatenā ’ti vā āpattiti vā anāpattiti vā lahuḱā āpattiti vā garuḱā āpattiti vā sāvasesā āpattiti vā anavasesā āpattiti vā duṭṭhullā āpattiti vā aduṭṭhullā āpattiti vā. yaṃ tattha bhaṇḍanaṃ kalaho viggaho vivādo

요컨대 붓다가 설한 교리나 계율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쟁사이다. ‘범이다, 범이 아니다 …’ 등의 18가지 사안에 관해 비구들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논쟁 쟁사는 파승을 야기하는 쟁사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쟁사보다 중대하다. 팔리어 소품 제7장 「파승건도」에서는 파승의 의미를 묻는 우빨리존자에게 붓다는 “만약 비구들이 이 18사에 의해 끌어들이고, 갈라지게 하고,¹⁶⁾ 별개의 포살을 하고, 별개의 자자를 하고, 별개의 승가갈마를 한다면, 파승이다.”¹⁷⁾라고 답하고 있다. 파승은 어머니를 죽이는 죄, 아버지를 죽이는 죄, 아라한을 죽이는 죄, 붓다의 몸에서 피를 내는 죄와 더불어 오역죄로 언급되며, 저지르면 일 겁 동안 지옥에서 고통 받는다고 한다.¹⁸⁾

이 논쟁 쟁사에 사용될 수 있는 멸쟁법은 ‘현전비니’와 ‘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이다. 이 중 현전비니는 본 고 제3장에서 상세히 고찰한다. 1차 현전비니가 실패하면 2차, 3차 현전비니를 거치고, 이 역시 실패하면 일종의 위원회 형식인 단사인(斷事人, ubbāhika) 제도를 거치고, 이 역시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다인어가 시도된다. 다인어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다수결과 유사한 방법이다. 다

nānāvādo aññathāvādo vipaccatāya vohāro medhakam idam vuccati vivādādhikaraṇaṃ.”(Vin, vol.2, p.88)

16) 여기서 “끌어들이고, 갈라지게 하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각각 apakāsanti 와 avapakāsanti이다. Sp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해체시켜 한쪽[자신의 편]으로 모으는 것이 끌어들이는 것(apakāsanti)이며, 극도로 끌어들이 [다른 편과] 분리된 것처럼 하는 것이 갈라지게 하는 것(avapakāsanti)이다.”라고 설명한다(Sp, vol.6, p.1280).

17) te imehi aṭṭhārasahi vatthūhi apakāsanti avapakāsanti āveṇiuposathaṃ karonti āveṇipavāraṇaṃ karonti āveṇisaṃghakammaṃ karonti. ettāvata kho Upāli saṃgho bhinno hoti.”(Vin, vol.2, p.204) 이 구절은 파승이 성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자랑, 『팔리어의 파승 정의 재고 -2종 파승의 관계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103,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23, pp.157-183.

18) Vin, vol.2, p.198.

만 그 다수가 반드시 ‘여법설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승가 멸쟁의 주요한 조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멸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포함하여 현전비니에서 다인어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 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¹⁹⁾

2. 비난 쟁사

둘째, 비난 쟁사(anuvāda-adhikaraṇa, 覓諍)이다. 비난이라 번역한 아누바다(anuvāda)는 비난, 비방, 교계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한역 율에서는 먹쟁(覓諍), 교계쟁(敎誡諍), 비방쟁(誹謗諍) 등으로 한역되고 있다.²⁰⁾ 「멸쟁건도」에 의하면, 비난 쟁사는 말라뿔따 답바(Mallaputta Dabba)라는 비구가 자(慈, Mettiyā) 비구니로부터 근거 없이 비방당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다. 자비구니는 답바 비구를 쫓아내기 위해 ‘답바 비구가 나를 범했다’며 무고하게 비방하여 그에게 바라이죄의 누명을 씌웠다. 그러나 답바는 이것을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고, 이로 인해 쟁사로 발전한다.²¹⁾ 이 인연담을 보아 분명하듯이, 비난 쟁사는 어떤 비구의 행동을 비난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쟁사를 가리킨다. 팔리어에서는 비난 쟁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 佐藤密雄, 앞의 책, 1972, pp.345-368.

森 章司, 論文21.(<http://www.sakya-muni.jp>)

이자랑, 앞의 논문, 2012, pp.1-41.

Stuart, Daniel, 앞의 논문, 2017, pp.225-267 등을 참조.

20) 『사분율』(大正藏22, 916상)

『오분율』(大正藏22, 154상)

『십송률』(大正藏23, 251중)

『마하승기율』(大正藏22, 327중)

21) Vin, vol.2, pp.74-80.

그 중에서 어떤 비난이 비난 쟁사인가? 여기서 비구들이 한 비구를 계의 위반·행의 위반·견해의 위반·생활의 위반으로 비난한다. 그 경우의 비난, 즉 비난하는 것, 추궁하는 것, 따지는 것, [비난으로] 몰아넣는 것, [비난에] 진력하는 것, [비난을] 강화하는 것, 이 비난이 비난쟁사이다.²²⁾

여기서 나란히 언급되는 계의 위반(sīlavipatti, 壞戒)·행의 위반(ācāravipatti, 壞行)·견해의 위반(ditthivipatti, 壞見)·생활의 위반(ājīvavipatti, 壞命) 중 앞의 셋은 빨리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바라이·13 승잔이 계의 위반이다. 투란차·바일제·바라제제사니·돌길라·악설이 행의 위반이다. 사견(邪見)·변집견(邊執見)이 견해의 위반이다.²³⁾

이를 보면 계와 행의 위반은 바라제목차의 위반이며, 전자는 중죄의 위반, 후자는 경죄의 위반에 해당한다. 견해의 위반은 샷된 견해나 변집견의 위반이다.²⁴⁾ 변집견이란 극단을 바른 것으로 생각하는 치우친 견해를 말한다. 즉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을 말한다. 한편, 생활의 위반에는 6종의 행위가 포함된다. 다음과 같다.

22) “tattha katamaṃ anuvādādhikaraṇaṃ. idha bhikkhave bhikkhū bhikkhuṃ anuvadanti sīlavipattiyā vā ācāravipattiyā vā ditthivipattiyā vā ājīvavipattiyā vā. yo tattha anuvādo anuvadanā anullapanā anubhaṇanā anusampavaṅkatā abbhussahanatā anubalappadānaṃ idaṃ vuccati anuvādādhikaraṇaṃ.”(Vin, vol.2, p.88)

23) “cattāri ca pārājikāni terasa saṃghādisesā ayaṃ sīlavipatti, thullaccayaṃ pācittiyaṃ pāṭidesanīyaṃ dukkaṭaṃ dubbhāsitaṃ ayaṃ ācāravipatti, micchādhiṭṭhi antaggāhikā ditthi ayaṃ ditthivipatti ti.(Vin, vol.1, p.172)

24) 견해에 관한 위배, 즉 사견과 변집견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학처는 빨리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É. Nolot., “Studies in Vinaya Technical Terms IV-X”,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25, The Pali Text Society, 1999, p.39) 다만 3종의 거죄갈마 등을 통해 악견을 갖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생활의 위배에 의해 몇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6종의 죄를 저지른다. 첫째, 생활을 위해, 생활을 이유로, 악한 욕구를 갖고, 욕구에 상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초인법(超人法)을 말한다면 바라이죄를 짓게 된다. [둘째] 생활을 위해, 생활을 이유로, 중매를 선다면 승잔죄가 있다. [셋째] 생활을 위해, 생활을 이유로, '당신의 승원에서 살고 있는 비구는 아라한입니다.'라고 말한 경우 [초인법을 말하여 무언가를 얻을 작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투란차죄가 있다. [넷째] 생활을 위해, 생활을 이유로, 비구가 좋은 식사를 자신을 위해 구걸하여 먹는다면 바일제죄가 있다. [다섯째] 생활을 위해, 생활을 이유로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자신을 위해 구걸하여 먹는다면 바라제제사니죄가 있다. [여섯째] 생활을 이유로 국 혹은 죽을 무병(無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구걸하여 먹는다면 돌길라죄가 있다. 생활의 위반에 의해 이상 6종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²⁵⁾

이 설명을 보면 생활의 위반이란 깨닫지 않았으면서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시를 받으려 하거나, 맛나고 영양가 많은 미식을 요청하여 먹는 등 주로 생활에 필요한 음식 등의 보시물을 울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²⁶⁾

25) ājīvavipattipaccayā kati āpattiyo āpajjati. cha āpattiyo āpajjati: ājīvahetu ājīvakāraṇā pāpiccho icchāpakato asantaṃ abhūtaṃ uttarimanussadhammaṃ ullapati āp. pārājikassa. ājīvahetu ājīvakāraṇā sañcarittaṃ samāpajjati āp. saṃghādisesassa. ājīvahetu ājīvakāraṇā yo te vihāre vasati so bhikkhu arahā 'ti bhaṇati paṭivijānantassa āp. thullaccayassa. ājīvahetu ājīvakāraṇā bhikkhu paṇītabhojanāni attano atthāya viññāpetvā bhuñjati āp. pācittiyassa. ājīvahetu ājīvakāraṇā bhikkhunī paṇītabhojanāni attano atthāya viññāpetvā bhuñjati āp. pāṭidesaniyassa. ājīvahetu ājīvakāraṇā sūpaṃ vā odanaṃ vā agilāno attano atthāya viññāpetvā bhuñjati āp. dukkaṭassa. ājīvavipattipaccayā imā cha āpattiyo āpajjati. (Vin, vol.5, p.99)

26) 이 6종의 행위와 비구·비구니 바라제목차 조문과의 관련에 관해서는 É. Nolot, 앞의 논문, 1996, p.97과 주 19), 佐々木閑, 앞의 논문, 2007, p.186과 주 51), 青野道彦, 앞의 책, 2020, pp.108-110을 참조. 각각 바라이 제4조, 승잔 제5조, 바라이 제4조의 보충 규정, 바일제 제39조, 비구니의 바라제제사니 제1-8조, 중학 제37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계·행·견해·생활에 관한 위배 사항에 대해 비구가 비난받을 때 비난 쟁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멸쟁법은 네 가지이다. 첫째, 현전비니(후술)이다. 둘째, ‘억념비니(憶念毘尼, sativinaya)’이다. 억념비니란 비방 당한 자의 기억을 채용하여 멸쟁시키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바라는 비구는 바라이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바라이의 누명을 쓰고 비방 당하였다. 이에 답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쟁사로 발전한 것인데, 이 경우 답바의 기억을 올바른 것으로 채용하고 그의 무죄를 인정하여 멸쟁한다. 답바는 7세에 아라한에 도달하고, 자진하여 승가에 봉사하기 위해 와좌구 분배자로 지원하여 활동할 정도로 훌륭한 비구였기에 이런 방법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멸쟁건도」에서 “이 경우 비구들이 한 비구를 근거 없이 계의 위반으로 중상 모략하였다.”²⁷⁾라고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억념비니는 주로 계의 위반, 즉 4바라이와 13승잔에 관한 비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셋째, ‘불치비니(不癡毘尼, amūḥavinaya)’이다. 이는 정신착란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범계 행위에 관해 문책하는 갈마이다. 비구가 선정에 전념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추정되는데, 문책을 통해 그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행한 범계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승가가 승인하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불치비니라는 멸쟁법이다.²⁸⁾ 억념비니도 불치비니도 비방당하거나 비난당한 비구가 승가에 요청함으로써 실행된다. 양자 모두 본인의 기억 내지 자백을 중심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만약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거짓으로 한다면 발각된 시점에서 무효가 된다.²⁹⁾

27) “idha bhikkhū bhikkhuṃ amūlikāya silavipattiya anuddhamṣenti.”(Vin, vol.2, p.99)

28) Vin, vol.2, pp.80-82.

29) Vin, vol.2, pp.82-83.

넷째, ‘떡죄상(覓罪相, tassapāpiyyasikā)’이다. 떡죄상은 승가에서 범계 사실에 대해 문책 받으면서도 횡설수설하며 죄를 인정했다가 부정했다가를 반복하며 고의로 거짓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멸쟁법이다. 「멸쟁건도」에 의하면, 우왈라(Uvāla)라는 비구가 승가에서 죄를 문책받으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발언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에 붓다는 우왈라 비구에게 백사갈마로 떡죄상갈마를 할 것을 지시하는데,³⁰⁾ 이 갈마를 받게 되면 비구의 권리 중 18가지가 제약을 받게 된다.³¹⁾ 예를 들어, 구속계를 줄 수 없다거나, 청정비구의 포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등이다.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범계 사실을 속이려 하는 자를 다른 비구들이 비난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떡죄상갈마를 통해 문책하고 죄를 결정하여 승가에 고지함으로써 다툼을 소멸시키는 멸쟁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바라이 내지 바라이에 근접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³²⁾

3. 범계 쟁사

범계 쟁사(āpatti-adhikaraṇa, 犯諍)는 어떤 비구가 계를 어겼는데, 그 판정을 둘러싸고 비구들 간에 의견이 나뉘어 발생하는 다툼이다. 한역율에서는 범쟁(犯諍), 범죄쟁(犯罪諍), 범죄사(犯罪事), 죄쟁(罪諍) 등으로 한역된다.³³⁾ 범계라 번역한 아빠띠(āpatti)는 죄, 죄과(罪過), 범계(犯戒) 등을 의미한다. 「멸쟁건도」에서는 “다섯 가지 범계가 범계

30) Vin, vol.2, pp.85-86.

31) Vin, vol.2, p.86.

32) Vin, vol.2, p.101. 이 점을 포함하여 떡죄상갈마에 관해서는 靑野道彦, 앞의 논문, 2020, pp.455-482에서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33) 『사분율』(大正藏22, 916상)
 『오분율』(大正藏22, 154상)
 『십송률』(大正藏23, 251중)
 『마하승기율』(大正藏22, 327중)

쟁사이며, 일곱 가지 범계가 범계 쟁사이다.”라고 하여 오편칠취(五篇七聚)가 범계 쟁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힌다.³⁴⁾ 오편칠취는 구속계의 분류 방식으로 바라이·승간·단타·제사니·악작이 오취, 이에 투란차와 악설을 더한 것이 칠취이다. 요컨대 범계 쟁사는 비구가 이 오편칠취에 속하는 계를 어겨 이에 대해 쟁론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범계 쟁사는 쟁사로 발전하지 않은 경우, 말하자면 범계한 비구를 데려다 놓고 문책하여 범계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죄를 결정하는 절차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계 쟁사에 적용되는 멸쟁법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는 ‘현전비니’(후술)이며, 둘째는 ‘자언치(自言治, paṭiññātakaraṇa)’이다.³⁵⁾ 자언치는 범계한 비구의 자백을 근거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후술할 현전비니의 요건 중에 쟁사 중인 양측 비구의 출석이 들어가는데, 이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문제의 당사자 출석 없이 이루어지는 갈마는 법에 반하는 갈마(adhammakamma)이자 율에 반하는 갈마(avinayakamma)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드시 당사자의 출석 하에 자백을 받아 일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올바른 자백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승가가 무조건 당사자의 자백에만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자언치는 아니다. 승가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관련 증거들도 참조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범계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자백함으로써 쟁사를 가라앉히는 것이 자언치라는 멸쟁법의 목적이다.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진정한 참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하다.

34) “pañca pi āpattikkhandhā āpattādhikaraṇaṃ satta pi āpattikkhandhā āpattādhikaraṇaṃ. idaṃ vuccati āpattādhikaraṇaṃ.”(Vin, vol.2, pp.88-89)

35) Vin, vol.2. pp.83-84.

셋째, ‘여초부지(如草覆地, *tiṇavatthāraka*)’이다. 여초부지는 풀이 땅을 덮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로 분열하여 싸우고 쟁론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상태가 지속되어 파승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로 덮고 가는 방식으로 사안을 수습하는 멸쟁법이다. 죄의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으며, 이미 서로 죄를 지은 상태라 참회를 행할 비구를 찾기도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멸쟁법인 것으로 보인다. 쟁론하는 양쪽 비구들이 모두 한곳에 모인 후, 총명 유능한 비구가 나와 지금의 상황을 고하며 중죄나 재가자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³⁶⁾ 여초부지법에 의해 사태를 수습할 것을 승가에 고지한다. 이후 양쪽에서 각각 총명 유능한 비구가 나와 동일한 내용을 각자가 속한 편에 고하며 자신과 그 외 비구들의 죄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여초부지로 참회하려 한다는 의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양쪽에서 각각 총명 유능한 비구가 나와 백이갈마의 형식으로 여초부지로 참회하는 갈마를 진행하면 된다.³⁷⁾

4. 의식 쟁사

의식 쟁사(*kiicca-adhikaraṇa*, 事諍)는 갈마와 관련된 사안을 말한다. 『사분율』에서는 사쟁(事諍)이라고 하며, 다른 율에서는 상소행사(常所行事), 상소행사쟁(常所行事諍) 등으로 한역된다.³⁸⁾ 의식이라 번역한 낫짜(*kiicca*)는 승가에서 실행하는 모든 의식, 즉 갈마를 의미한다. 「멸

36) 중죄는 바라이와 승잔을 가리킨다. 중죄의 경우 참회만으로는 出罪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다. 재가자와 관련된 사안은 출가자끼리 참회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제외되고 있다.

37) Vin, vol.2, pp.86-88.

38) 『사분율』(大正藏22, 916상)
 『오분율』(大正藏22, 154상)
 『십송률』(大正藏23, 251중)
 『마하승기율』(大正藏22, 327중)

쟁건도」에서는 “승가가 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이므로 구청갈마(求聽羯磨), 백갈마(白羯磨), 백이갈마(白二羯磨),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행사 갈마라 부른다.”라고 설명한다.³⁹⁾ 이 설명으로 보아 의식 쟁사는 각종 형식의 갈마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명확한데, 「멸쟁건도」에서도 Sp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빨리울 「부수」에서는 의식 쟁사로 인해 성립하는 죄에 돌길라, 투란차, 바라이, 승잔, 바일체의 5종이 있다⁴⁰⁾는 기술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의식 행사에 적용되는 멸쟁법은 ‘현전비니’ 한 가지뿐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승가에서 비구 간에 발생하는 쟁사에는 4종이 있으며, 쟁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멸쟁법 역시 다르다. 4종 쟁사와 칠멸쟁법의 관계를 빨리울 「멸쟁건도」에 근거해서 표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⁴¹⁾

4종 쟁사	7멸쟁법
언쟁	현전비니 / 다인어
떡쟁	현전비니 / 억념비니 / 불치비니 / 떡죄상
범쟁	현전비니 / 자언치 / 여초부지
사쟁	현전비니

이들 칠멸쟁법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으므로⁴²⁾ 본 고에서는 이하 ‘현전비니’를 중심으로 멸쟁법의 쟁사 해결 원칙을 검토한다. 현전비니는 칠멸쟁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

39) “yā saṃghassa kiccayatā karaṇīyatā apalokanakammaṃ ñattikammaṃ ñattidutiyakammaṃ ñatticatutthakammaṃ idaṃ vuccati kiccādhikaraṇaṃ.” (Vin, vol.2, p.89)

40) Vin, vol.5, pp.100, 153.

41) Vin, vol.2, pp.93-104.

42) 본 고의 주5)를 참조.

한 멸쟁법으로,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쟁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Ⅲ. 현전비니의 성립 요건

1. 승가·법·율·사람의 현전

칠멸쟁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멸쟁법은 ‘현전비니(現前毘尼, sammukhāvinaya)’이다. 이는 쟁사를 판결하기 위해 열리는 갈마의 기본 성립 요건으로, 이 요건들을 갖추고 이루어진 갈마이기에 거기서 나온 결정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빠리울 「멸쟁건도」에서는 현전비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중에서 현전비니에는 무엇이 있는가? 승가의 현전, 법의 현전, 율의 현전, 사람의 현전이다. 그 중에서 무엇이 승가의 현전인가? 갈마에 적합한 비구 전원이 와 있어야 하며, 위임의 자격 있는 자들의 위임이 당도하고, 현전하고 있는 자들이 불복(不服)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승가의 현전이다. 법의 현전과 율의 현전은 무엇인가? 법에 의해서, 율에 의해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사안(쟁사)가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현전과 율의 현전이다. 사람의 현전은 무엇인가? 논쟁을 하는 자와 [그 자에 의해] 논쟁을 하는 자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자들이 양쪽 모두 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현전이다.⁴³⁾

43) “kiñ ca tattha sammukhāvinayasmiñ. saṃghasammukhatā dhammasammukhatā vinayasammukhatā puggalasammukhatā. kā ca tattha saṃghasammukhatā. 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āgatā honti, chandārahānaṃ chando āhaṭṭo hoti, sammukhībhūtā na paṭikkosanti. ayaṃ tattha saṃghasammukhatā. kā ca tattha dhammasammukhatā vinayasammukhatā. yena dhammena yena vinayena yena satthusāsanena taṃ adhikaraṇaṃ vūpasammati ayaṃ tattha dhammasammukhatā vinayasammukhatā. kā ca tattha

이 설명에 의하면, 현전비니란 승가(saṃgha) · 법(dhamma) · 율(vinaya) · 사람(puggala)의 네 가지 조건이 현전, 즉 눈앞에 지금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승가의 현전’을 충족시키는 세 가지 조건으로 언급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마에 적합한 비구 전원이 와 있어야 한다.(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āgatā honti)’라는 조건이다. Sp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갈마에 적합한 비구 전원이 와 있어야 한다’란 이 경우 4명의 대중이 하는 갈마에는 4명이, 5명의 대중이 하는 [갈마에는] 5명이, 10명의 대중이 하는 [갈마에는] 10명이, 20명이 하는 [갈마에는] 20명의 비구가 갈마에 [참가할] 권한을 지닌 자라고 이해해야 한다.⁴⁴⁾

puggalasammukhatā. yo ca vivadati yena ca vivadati ubho attapaccatthikā sammukhībhūtā honti. ayaṃ tattha puggalasammukhatā.” (Vin, vol.2, pp.93-94) 한편, 『사분율』에서는 “무엇이 법, 毘尼, 人, 僧, 界가 현전한 것인가? 무엇이 법현전인가? 법을 가지고 멸쟁하는 것이다. 무엇이 비니현전인가? 비니를 가지고 멸쟁하는 것이다. 무엇이 인현전인가? 논의가 오고 가는 것이다. 무엇이 승현전인가? 동일한 갈마를 화합하여 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고, 오지 못하는 자는 위임하고, 눈 앞에서 가책해야 할 자는 가책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계현전인가? 계 안에서 갈마하며 제한을 만드는 것이다(云何現前法毘尼人僧界 云何法現前 所持法滅諍者是 云何毘尼現前 所持毘尼滅諍者是 云何人現前 言義往返者是 云何僧現前 同羯磨和合集一處 不來者囑授在現前 應呵者不呵者是 云何界現前 在界內羯磨作制限者是).”라고 기술한다(大正藏22, 917상-중). 빨리올과 달리 法·毘尼·人·僧·界의 5종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僧 안에 界를 포함시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따로 계를 해야 된 것은 아마도 승가가 ‘결계를 하고 정족수를 채워서’ 갈마를 해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은 아닐까 추정된다.

44) “yāvatikā ca bhikkhū kammappattā ’ti ettha catuvaggakaraṇe kamme cattāro, pañcavaggakaraṇe pañca, dasavaggakaraṇe dasa, visativaggakaraṇe vīsati bhikkhū kammappattā ’ti veditabbā.”(Sp, vol.6, p.1197)

이 설명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갈마의 종류에 따른 정족수의 총족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회의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각각 4명, 5명, 10명, 20명의 갈마는 빠리올 대품 제9장 「침과건도(Campeyyakkhandhaka)」에 보이는 5종 승가(pañca saṅghā)와 연관이 있다. 「침과건도」에 의하면, 승가는 4명의 비구로 이루어진 승가, 5명의 비구로 이루어진 승가, 10명의 비구로 이루어진 승가, 20명의 비구로 이루어진 승가, 2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승가가 있다. 이 중 4인 비구승가에서는 구족계갈마, 자자갈마, 출죄갈마를 제외한 모든 여범화합갈마를 할 수 있으며, 5인 비구승가에서는 중심 지역에서의 구족계갈마⁴⁵⁾와 출죄갈마를 제외한 모든, 10인 비구승가에서는 출죄갈마를 제외한 모든, 20인 비구승가와 20인 이상의 비구승가에서는 모든 여범화합갈마를 실행할 수 있다.⁴⁶⁾ 따라서 ‘갈마에 필요한 비구 전원이 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은 실행하려는 갈마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족수를 채우는 비구들은 청정비구여야 한다. 「침과건도」에서는 갈마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다.⁴⁷⁾ 이를 보면 비구나 사미, 3종의 거죄갈마를 받은 자, 오역죄를 저지른 자, 다른 계에 속한 자 등 청정비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은 갈마의 정족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은 동일한 경계에 속한 비구들의 전원출석 정도의 의미로 막연하게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⁴⁸⁾ 갈마를 하기 위해서는 계의 설정이 필수이며 그 안에 속한 비구들의 전원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

45) 변방에서는 5명이 구족계갈마를 줄 수 있다. Vin, vol.1, p.197.

46) Vin, vol.1, pp.319-320.

47) 갈마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 관해서는 Vin, vol.1, p.320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48) 靑野道彦, 앞의 책, 2020, p.97에서는 이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만, 주석의 설명 등을 고려할 때 청정비구로 정족수를 채운다는 점에 핵심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둘째, ‘위임을 할 자격을 갖춘 자들의 위임이 당도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병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비구를 통해 승가에 위임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여욕(與欲)’이라고 한다. 이는 갈마에서 내려진 결정에 후일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에 다름 아니다. 만일 위임을 전한 후 그 갈마에서 내려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바일제 제79조 ‘여욕후회계(與欲後悔戒)’를 어기게 된다.⁴⁹⁾

셋째, ‘현전하고 있는 자들이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갈마에 참석한 비구들이 그 갈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해당 갈마의 집행에 대해 찬동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거부한다, 혹은 이의를 제기한다 등의 의미로 번역한 빠띠꼬사띠(paṭikkosati)는 다음 사례에서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비구니 바일제 제53조 ‘매비구니중계(罵比丘尼衆戒)’에 의하면, 쩌다갈리(Caṇḍakālī)라는 비구니는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승가에 종종 싸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녀를 대상으로 승가가 갈마를 하려 하면 틀라난다(Thullanandā) 비구니가 항상 이의를 제기하며 막았다 [paṭikkosati]. 즉, 갈마의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제자인 쩌다갈리가 갈마를 받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이에 틀라난다가 승원을 비운 사이에 승가는 쩌다갈리에게 불견죄거죄갈마(不見罪舉罪羯磨, āpattiyaḍassane ukkhepaniyakamma)를 시행하였다고 한다.⁵⁰⁾ 또한 빨리울 대품 「포살건도」에는 육군(六群)비구가 비법갈마를 하는 것을 보고 비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paṭikkosati] 내용이 나온다.⁵¹⁾ 따라서 이 세 번째 조건

49) Vin, vol.4, pp.151-152.

50) Vin, vol.4, pp.309-310.

51) Vin, vol.1, p.115.

은 집행하고자 하는 갈마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갈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²⁾

이상 세 가지 조건은 「첨과건도」에서 화합갈마 내지 여범화합갈마의 성립을 좌우하는 조건으로도 언급된다.⁵³⁾ 요컨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안건을 다루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서의 ‘화합승가’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채 갈마가 이루어진다면 별중(別衆)갈마가 되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져도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법의 현전’과 ‘율의 현전’은 법과 율과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 율, 스승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바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율장에서는 법과 율(혹은 毘尼)의 구체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현전비니와 관련된 이 부분은 갈마의 절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빨리울 「빠리와라(Parivāra, 附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에 의해서’란 실제로 있었던 사안에 의해 [라는 의미이다.] ‘율에 의해서’란 문책하고 기억시키고 [라는 의미이다.]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란 백(白)의 성취와 갈마어(羯磨語)의 성취에 의해 [라는 의미이다.] 법에 의해, 율에 의해,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그 쟁사가 수습되도록 그렇게 그 쟁사를 수습해야 한다.⁵⁴⁾

52) 필자는 기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세 번째 조건을 해석함에 혼동이 있었다. 이자랑, 「僧伽羯磨의 성립 조건에 관한 고찰 -첨과 건도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4, 불교학연구회, 2002, p.250에서는 이런 의미로 해석했지만, 이후 발표한 몇몇 논문에서 부주의하게 ‘갈마에 청정하지 못한 비구가 끼어 있어 이에 대해 다른 비구가 이의를 제기하며 비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부끄럽게 생각하며 본고에서 정정해둔다.

53) Vin, vol.1, pp.318-319. 이자랑, 위의 논문, 2002, pp.248-252.

54) “yena dhammenā ti bhūtena vatthunā. yena vinayenā ti codetvā sāretvā. yena satthu sāsanenā ti ñattisampadāya anussāvanasampadāya.

이 설명에 의하면, ‘법에 의해, 율에 의해, 스승에 의해’란 실제로 있었던 사안에 관해 죄를 문책하고, 기억시키며, 갈마의 안건 고지[白]와 찬반 여부 확인[羯磨語]을 정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율에 규정된 갈마의 진행 방식에 근거하여 쟁사를 수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죄를 문책하고 기억시킨다는 것은 빨리울 소품 「갈마건도」에서 거론하는 고절갈마(苦切羯磨, tadjaniyakamma), 의지갈마(依止羯磨, nissayakamma), 구출갈마(驅出羯磨, pabbājanīyakamma), 하의갈마(下意羯磨, paṭisāraṇīyakamma), 3종의 거죄갈마(擧罪羯磨, ukkhepanīyakamma)라는 일련의 징벌갈마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할 때는 문책하고(codetabbā), 문책한 후 기억시키고(sāretabbā), 기억시킨 후에 죄를 정해야 한다(āpattiṃ ropetabbā).⁵⁵⁾ 그리고 나서 이를 백사갈마의 형태로 확정짓게 되는 것이다. 문책 과정은 Sp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먼저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발언의 기회를 얻은 후 발생한 사안과 저지른 죄에 대해 문책하게 된다. 기억시킨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한다.⁵⁶⁾ 자백하지 않으면 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 백의 성취와 갈마어의 성취란 갈마를 실행할 때 안건 고지에 해당하는 백과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갈마어를 모두 정확하게 읊는 것을 말한다. 「침과건도」에서는 백과 갈마설을 여법갈마와 비

yena dhammena yena vinayena yena satthu sāsanena taṃ adhikaraṇaṃ vūpasammati tathā taṃ adhikaraṇaṃ vūpasametabban ti.”(Vin, vol.5, p.170)

von Hinüber, Oskar., “Buddhist Law According to the Theravāda-Vinaya: A Survey of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24. 한편, Sp, vol.3, pp.590, 903 등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靑野道彦, 앞의 책, 2020, p.82의 주74)를 참조.

55) Vin, vol.2, pp.1-23.

56) Sp, vol.3, p.624.

법갈마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도 제시한다. 즉, 갈마의 종류에 따라 읊어야 할 백과 갈마설의 횟수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비법갈마가 된다.⁵⁷⁾

네 번째 조건인 사람의 현전이란 문제의 양측 당사자들이 갈마를 하는 자리에 모두 참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양측을 통해 사안의 진상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불참한 상태에서 갈마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갈마를 실행하면 갈마의 집행자는 악작(惡作, dukkaṭa)죄에 처해진다.⁵⁸⁾

이와 같이 현전비니란 갈마에 참석할 자격을 갖춘 비구들이 정족수를 채우고 한 자리에 모여 화합승가를 형성한 후 율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거쳐 양쪽 당사자들의 입회 하에 쟁사를 수습하는 멸쟁법이다.

2. 여법에 의한 쟁사 수습

현전비니로 멸쟁을 할 때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조건 외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반드시 여법설자(如法說者, dhammavādin)가 비법설자(非法說者, adhammavādin)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안이 수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멸쟁건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법설자인 개인·비법설자인 다수·비법설자인 승가·여법설자인 개인·여법설자인 다수·여법설자인 승가[가 있다.] 비법설자인 개인이 여법설자인 개인에게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율입니다, 이것이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에 동의하세요.’라고 말하며 설득하고, 호의적으로 만들고, 관찰하게 하고 또 관찰하게 하며, 보여주고 또 보여준다.

57) Vin, vol.1, pp.317-318.

58) Vin, vol.2, p.73.

만약 이와 같이 해서 그 쟁사를 가라앉힌다면 비법으로 가라앉힌 것으로 유사현전비니이다.⁵⁹⁾

총 9종의 유사(類似)현전비니⁶⁰⁾, 즉 얼핏 보기에는 현전비니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듯 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현전비니가 아니므로 인정 받을 수 없는 멸쟁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법설자 개인이 여법설자 개인을 대상으로 설득하여 쟁사를 가라앉힌 경우만을 인용하였지만, 「멸쟁건도」에서는 이어 비법설자 개인이 여법설자 다수를, 비법설자 개인이 여법설자 승가를, 비법설자 다수가 여법설자 개인을, 비법설자 다수가 여법설자 다수를, 비법설자 다수가 여법설자 승가를, 비법설자 승가가 여법설자 개인을, 비법설자 승가가 여법설자 다수를, 비법설자 승가가 여법설자 승가를 설득하여 쟁사를 가라앉힌 경우를 넣어 총 9가지 유사현전비니의 사례를 언급한다. 그리고 다시 여법설자 개인 등이 비법설자 개인 등을 설득하여 쟁사를 가라앉히는 9가지 사례를 동일한 패턴으로 소개하며, 이것이야말로 현전비니라고 설명한다. 즉, 개인이든 다수든 승가든 상관없이 반드시 여법설자가 비법설자를 설득하여 쟁사를 가라앉힐 때 비로소 현전비니라는 멸쟁법은 성립하는 것이다. 현전비니가 모든 종류의 쟁사에 다 적용되는 기본 멸쟁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 역시 모든 쟁사에 다 적용되어야

59) “adhammavādī puggalo, adhammavādī sambahulā, adhammavādī saṃgho, dhammavādī puggalo, dhammavādī sambahulā, dhammavādī saṃgho. adhammavādī puggalo dhammavādīṃ puggalaṃ saññāpeti nijjhāpeti pekkheti anupekkheti dasseti anudasseti ayaṃ dhammo ayaṃ vinayo idaṃ satthusāsaṇaṃ imaṃ gaṇhāhi imaṃ rocehīti. evañ ce taṃ adhikaraṇaṃ vūpasammatti adhammena vūpasammatti sammukhāvinayaṭṭirūpakena.”(Vin, vol.2, pp.73-74)

60) 유사현전비니는 sammukhāvinaya-ṭṭirūpaka를 번역한 말이다. ṭṭirūpaka(유사)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법을 ‘가장한’ 가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사현전비니란 얼핏 보면 여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행된 것으로, 성립 불가이다.

한다.

그렇다면 여법설자와 비법설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빨리올 대품 「꼬삼비건도(Kosambikkhandhaka)」에서는 여법설자와 비법설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사리뵗따에게 붓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사리불야, 비법설자는 18 가지 사항에 의해 구분해야 한다. 사리불야, 여기 한 비구가 비법을 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을 비법이라고 주장한다, 율이 아닌 것을 율이라고 주장한다, 율인 것을 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래가 설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여래가 설하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여래가 설하고 말씀하신 것을 여래가 설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여래가 행하지 않은 것을 여래가 행했다고 주장한다, 여래가 행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래가 제정하지 않은 것을 여래가 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여래가 제정한 것을 여래가 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무죄를 죄라고 주장한다, 죄를 무죄라고 주장한다,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라고 주장한다,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라고 주장한다, 유여죄를 무여죄라고 주장한다, 무여죄를 유여죄라고 주장한다, 추죄를 비추죄라고 주장한다, 비추죄를 추죄라고 주장한다. 사리불야, 이 18 가지 사항에 의해 비법설자를 구분해야 한다.

사리불야, 이 18 가지 사항에 의해 여법설자를 구분해야 한다. 비법을 비법이라고 주장한다. ... 비추죄를 비추죄라고 주장한다. 사리불야, 이 18 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여법설자를 구분해야 한다.⁶¹⁾

61) “atthārasahi kho Sāriputta vatthūhi adhammavādī jānitaḥho. idha Sāriputta bhikkhu adhammaṃ dhammo 'ti dīpeti, dhammaṃ adhammo 'ti dīpeti, avinayaṃ vinayo 'ti d., vinayaṃ avinayo 'ti d., abhā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a bhāsitaṃ lapitaṃ tathāgatena 'ti d., bhāsitaṃ lapitaṃ tathāgatena abhā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a 'ti d., anāciṇṇaṃ tathāgatena āciṇṇaṃ tathāgatena 'ti d., āciṇṇaṃ tathāgatena anāciṇṇaṃ tathāgatena 'ti d., appaññattaṃ tathāgatena paññattaṃ tathāgatena 'ti d., paññattaṃ tathāgatena appaññattaṃ tathāgatena 'ti d., anāpattiṃ āpattitī d., āpattiṃ anāpattitī d., lahukaṃ āpattiṃ garukā āpattitī d., garukaṃ āpattiṃ lahukā āpattitī d., sāvasesaṃ āpattiṃ anavasesā āpattitī d., anavasesaṃ āpattiṃ sāvasesā āpattitī d., duṭṭhullaṃ āpattiṃ aduṭṭhulla āpattitī d., aduṭṭhullaṃ āpattiṃ duṭṭhulla āpattitī dīpeti.

여법설자와 비법설자를 구분하는 총 1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붓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자가 여법설자이며, 반하는 주장을 하는 자가 비법설자이다. 이 18가지 사항은 본 고 제2장에서 ‘논쟁 쟁사’를 언급할 때 논쟁 쟁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거론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요컨대 승가 구성원들 간에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쟁사를 해결해야 할 주요한 기준이기도 한 것이다. 쟁사는 서로 자신들이 여법설자라고 생각하기에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올바른 멸쟁 과정을 거쳐 여법을 확인하며 쟁사를 소멸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전비니를 포함한 칠멸쟁법은 단지 쟁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멸쟁 과정을 통해 붓다가 설한 법과 율이 무엇인지 구성원에게 인식시키며 여법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 빨리올 「멸쟁진도」와 Sp의 설명에 근거하여 4종 쟁사와 칠멸쟁법, 특히 그중에서도 칠멸쟁법의 기본이 되는 현전비니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중심으로 멸쟁법의 쟁사 해결 원칙을 살펴보았다. 핵심은 결격 사유가 없는 청정비구로 정족수를 채운 후 올바른 진행 방식으로 쟁사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때 위임을 하지 않은 채 불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화합갈마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 갈마를 하는 일차 목적은 물론 사태를 수습하여 쟁사를 가라앉히는 것이겠지만, 이를 통해

imehi kho Sāriputta aṭṭhārasahi vatthūhi adhammavādi jānitabbo.
 aṭṭhārasahi ca kho Sāriputta vatthūhi dhammavādi jānitabbo. idha
 Sāriputta bhikkhu adhammaṃ adhammo 'ti dipeti, ... aduṭṭhullaṃ
 āpattiṃ aduṭṭhullā āpattiṃ dipeti. imehi kho Sāriputta aṭṭhārasehi
 vatthūhi dhammavādi jānitabbo 'ti.(Vin, vol.1, pp.354-355)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은 승가의 화합이다. 따라서 갈마 시행 후 불화의 씨앗을 낳을 수 있는 요소를 가능한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정족수 미달은 회의의 불성립에 다름 아니며, 위임을 받지 않고 갈마를 시행하여 결론을 내면 훗날 위임하지 않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사회의 경우 회의를 할 때 정족수를 채우는 최소 요건은 일반적으로 과반수 출석 이상이며, 이 요건만 충족되면 회의는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전비니갈마에서 정족수를 채운다는 것은 결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즉, 동일한 결계 안에 속한 어떤 결격 사유도 없는 청정한 비구들이 모여 최소한의 정족수를 채운 후 전원출석·만장일치로 갈마를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정족수를 채웠다 해도 그 갈마를 비난하며 실행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이 역시 감행해서는 안 된다. 갈마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이 역시 두고두고 불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전비니를 비롯한 멸쟁법의 실행 목적은 단지 쟁사를 해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승가의 구성원이 화합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안을 정리해 가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약호 및 원전자료 >

- Vin = Vinayapīṭaka, vols.1-5, PTS.
 Sp = Samantapāsādikā, vols.1-7, PTS.
 大正藏 = 대정신수대장경
 PTS = The Pali Text Society
 『사분율』, 大正藏 22
 『오분율』, 大正藏 22
 『십송률』, 大正藏 23
 『마하승기율』, 大正藏 22

< 저서 및 논문 >

- 덕산(원두),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그 문제점」, 불교교단사연구소 편, 『僧伽和合과 韓國佛敎의 未來』, 혜민기획, 2005.
- 마 성, 「四種諍事와 七滅諍法の 意義 - 『빨리율』과 『사분율』의 「멸쟁건도」를 중심으로-」, 불교교단사연구소 편, 『僧伽和合과 曹溪宗의 未來』, 혜민기획, 2014.
- 목정배, 「七滅諍法の 現代의 意味」, 『明星스님古稀記念佛敎學論文集』, 雲門僧伽大學出版部, 2000.
- 이자랑, 「僧伽羯磨의 성립 조건에 관한 고찰 -침과 건도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4, 불교학연구회, 2002.
- _____,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단의 쟁사 해결 방법 -빨리율 「멸쟁건도」를 중심으로-」, 불교교단사연구소 편, 『僧伽和合과 韓國佛敎의 未來』, 혜민기획, 2005.
- _____,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선문화연구』 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2.
- _____, 「단사인(斷事人) 제도와 승가 분쟁 해결의 원칙: 제 2 결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와 사회』 10-1,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18.
- _____, 「빨리율의 파승 정의 재고 -2 종 파승의 관계를 중심으로-」, 『불

- 교학보』103,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23.
- 井上博文, 「斷事人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57-2,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9.
- 青野道彦, 『パーリ佛教戒律文獻における懲罰儀禮の研究』, 山喜房佛書林, 2020.
- 佐藤密雄, 『原始佛教教團の研究』, 山喜房佛書林, 1963.
- 佐々木閑, 「律藏の中のアディカラナ 1」, 『佛教研究』 35, 國際佛教徒協會, 2007.
- 平川彰, 「原始佛教教團における裁判組織」, 『古代學』 2-1, 古代學協會, 1953.
- _____, 「原始佛教教團における紛争解決について」, 『日本佛教學會年報』 39, 日本佛教學會, 1974.
- 森 章司, 『初期佛教教團の運營理念と實際』, 國書刊行會, 2000.
- _____, 「サンガにおける紛争の調停と犯罪裁判」, 『中央學術研究所紀要』モノグラフ篇, No.16, 論文 20. (<http://www.sakya-muni.jp>)
- _____, 「紛争解決法としての多数決とその理念」, 『中央學術研究所紀要』モノグラフ篇, No.16, 論文 21. (<http://www.sakya-muni.jp>)
- Stuart, Daniel., “Legislating Consent: Dispute, Accord, and the Vote in Early Indian Monasticisms”, Susan Andrews & Jinhua Chen & Cuihan Liu(Eds.), *Rules of Engagement*, Freiburg: Dunhuang Academy, 2017.
- Masanori Shōno, “On adhikaraṇa”, 『印度學佛教學研究』, 54-3,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6.
- É, Nolot., “Studies in Vinaya Technical Terms I – III”,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22, 1996.
- _____, “Studies in Vinaya Technical Terms IV – X”,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25, 1999.
- Hubert Durt, “The Counting Stick(Śalākā) and the Majority –Minority Rule in the Buddhist Community”, 『印度學佛教學研究』 23-1, 1974.
- Von Hinüber, Oskar., “Buddhist Law According to the Theravāda–Vinaya: A Survey of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Abstract

'Rul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Principles for Settling Disputes

– Focus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Sammukhāvinaya –

Lee, Ja-rang

(Associate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inciples for settling disputes in Buddhist saṃgha, focusing on sammukhāvinaya 現前毘尼, one of the seven modes of settling disputes 七滅諍法. According to the Samathakkhandhaka, when disputes arise among the monks, they must be resolved through the seven modes of settling disputes. The seven modes of settling disputes refer to sammukhāvinaya, sativinaya 憶念毘尼, amūḥavinaya 不癡毘尼, paṭiññātakaraṇa 自言治, yebhuyyasikā 多人語, tassapāpiyyasikā 覓罪相, tiṇavattharaka 如草覆地. These rules of the modes settling disputes are selectively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isputes, but the sammukhāvinaya are universally applicable to all disputes. In essence, the sammukhāvinaya is the most fundamental mode for settling disputes, specifically embodying four criteria: saṃgha 僧伽, dhamma 法, vinaya 律, puggala 人. Among these, saṃgha denotes forming the subject that settles the disputes. This saṃgha must fulfill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Firstly, it must be comprised of monks without disqualifications, meeting the quorum and being operational. Secondly, those who cannot attend should delegate. Thirdly, there should be no objection from anyone regarding the conduct of the procedure 羯磨 aimed at settling disputes. On the one

hand, dhamma and vinaya have been understood in previous research to judge the issue based on the teachings of Buddha, however, according to Samantapāsādikā, it means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procedural rules of the procedure already established, concerning the issues that have arisen. Puggala refers to both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attending the procedure. While there is existing prior research on the seven methods of settling disputes, this paper reexamines each condition of sammukhāvinaya,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explanations in the Samantapāsādikā. Through this examination, it has been clarified that the rul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monastic community is aimed at maintaining harmony among the members based on the rules established by Buddha.

Key words

rul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seven modes of settling disputes, disputes, sammukhāvinaya, vivāda-adhikaraṇa, anuvāda-adhikaraṇa, āpatti-adhikaraṇa, kicca-adhikaraṇa, Samathakkhandhaka, harmony

논문투고일 : '24. 4. 30. 심사완료일 : '24. 5. 22. 게재확정일 : '24. 5. 22.